###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96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광희·허성무·주철현

김문수 • 박해철 • 김승원

박지원 • 황명선 • 정동영

이상식 · 김우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며, 선거여론조사 후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위법한 선거여론 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해도 확대되고 있어 건전한 정치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범죄의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하여 선거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1항).
-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의9제5항).
-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08조제6항).
- 라.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3호 신설).
- 마. 이 법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 장함(안 제268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1항 중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8조제6항 중 "6개월까지"를 "5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

제218조의26제1항을 삭제한다.

제268조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을"을 "5년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	등록 등) ①
단체가 <u>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u>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	⑤
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	<u>2</u>
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u>년</u>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⑥ (생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⑤ (생 략) ⑥ 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 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 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 ・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 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調査의 신뢰성 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 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 석자료 등 해당 輿論調査와 관 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 의 선거일 후 <u>6개월까지</u> 보관 하여야 한다. ⑦ (생략)

-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생략) <신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5년까지</u>		
⑦ (현행과 같음)		
8		
1. • 2. (현행과 같음)		
3.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		
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		

ı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① 제268조제1항	공소시효 등) <u>&lt;삭 제&gt;</u>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	
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	
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268條(公訴時效) ① 이 法에 規	第268條(公訴時效) ①
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	
擧日후 <u>6개월</u> (선거일후에 행하	<u>5년</u>
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u>6개월</u> )을 경과함으로써	<u>5년</u>
完成한다. <u>다만, 범인이 도피한</u>	<u>&lt;단서 삭제&gt;</u>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	
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	
<u>로 한다.</u>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②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	
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	
온 날부터 <u>6개월을</u> 경과함으로	<u>5년을</u>
써 완성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